##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숭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83 발의연월일: 2024. 9. 23.

발 의 자: 백승아·박해철·권향엽

황정아 • 윤건영 • 허성무

김남희 • 박홍배 • 박희승

강준현 · 조계원 · 이광희

정진욱 • 문금주 • 이기헌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입전형에서 논술, 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고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입전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함)에 관하여는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어 선행교육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에도 수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고 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억한다고 시험의 성격과 목적을 분명히 하 고 있는바, 현행법에 수능시험도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과 대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입전형 전반에 관한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을 방지하고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8조 신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3(대학수학능력시험)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준수를 위한 기준·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과 제3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자
  - 2.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학교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 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학등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 설>

따른 공표의 절차・방법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자
  - 2.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학교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 학등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 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